

□ WTO의 개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전세계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이다. 의결기관으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있고 일반업무와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nference)가 있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환경위원회를 비롯해서 3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서비스교역 이사회를 비롯 2개의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1994. 4. 15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전세계 111개국이 서명한 ¹⁾WTO

협정은 세계헌법으로서의 구성을 갖추게됨으로서 WTO체제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우리나라도 1994.12. 16 국회 비준이 통과되어 1995. 1. 1부터 가입국이 되었다) WTO 협정은 전문과 16개조문 그리고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보이는 WTO의 목표는 세계인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 생산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증대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보존·유지해야 하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²⁾이라는 환경보존에 대한 선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부속된 협약들은 해당분야의 시장개방을 주제로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ATG,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등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개방약속과 양허조건을 담은 국별 양허표가 첨부되어 협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 WTO의 특징

1. 규범성

WTO는 GATT 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하여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³⁾

2. 포괄성

과거 GATT 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물품교역 분야에서의 사각지대로 배제 되었던 농업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3. 진보성

WTO 체제는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축소·철폐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케함으로써 국경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룸

1) 협정은 UR협상 최종 참가국 수는 125개국임

2) Rio de Janeiro 환경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개념으로(1992. 브라질) Rio Declaration(환경선언)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음 협상의 주제를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건축환경”에 관한 우리의 입장 및 기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948년 이래의 GATT 체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분쟁해결이나 감시기능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특히 선진국들의 상품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의 시장확대를 통한 시장개방 촉구를 도모하게 됨

□ WTO의 원칙

1. 최혜국 대우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WTO체제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 원칙이다.

2. 내국민 대우

외국인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S에서는 내국인 대우에 대한 원칙적용의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장접근 보장

관세와 조세를 제외하고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S에서는 국별 양허표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투명성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및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개방의 실질적인 원칙이다.

투명성의 원칙은 WTO체제의 일관된 원칙이나 국가안전 보장관계, 법집행에의 방해요소, 영업상의 비밀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WTO협정문의 구성

전문 및 본문 (16조)

부속서 1.

1-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GATT, 1994)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⁴⁾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허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PTA)⁵⁾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

국제 낙농협정

국제 우육협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 서비스의 정의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나 UR에서는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서비스의 종류

1) 업종별 분류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GATT 사무국에서 서비스 분류 목록(MTN.GNS/W/120)을 작성하여 각국에서 양허협상을 진행시키는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 직업분류는 ⁶⁾CPC(중앙 상품분류기준,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축(설계)의 경우는 CPC, 8671과 GNS/W/120, I.A.d로 되어있다.

2)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없으므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으로 하여금 지방정부 및 기관들과 비정부기관들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⁷⁾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상업적 차원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협정적용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서비스의 유형

① 서비스의 국경이동(Cross – border supply)

건축설계를 외국에서 하여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

그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②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전항과 대동소이.

설계도서를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외국건축가가 건축설계를 수주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 법인의 설립

· 법인의 인수 또는 유지

· 지사나 대표사무실의 창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외국인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계행위를 함을 의미.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3. 협정문의 구성

GATS 협정문은 본문, 부속서, 국가별 자유화 약속표(양허표)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및 정의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4)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함. UR 서비스업종 분류표(1편, 표 8 참조)로서 규율하고 있는데 건축(설계)서비스는 사업 서비스중 전문직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GATS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다.

5)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가입국가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우리나라에는 AGP에만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민간하는 건축설계 및 건설에 대해서는 AGP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1997. 1. 1부터 적용을 받음)

6) UN에서 작성하여 각국에 배부. 1991

7) 법률에서 위임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 국가면허(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 운전면허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조 최혜국 대우
- 제3조 투명성
- 제3조의2 비밀정보의 공개
-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 제5조 경제통합
- 제5조의2 노동시장 통합협정
- 제6조 국내 규제
- 제7조 인정
-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 제9조 영업관행
- 제10조 긴급수입제한 조치
- 제11조 지불 및 이전
-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 제13조 정부조달
-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 제14조의2 안보상의 예외
- 제15조 보조금
- 제3부 구체적 약속
- 제16조 시장접근
- 제17조 내국민 대우
- 제18조 추가적 약속
- 제4부 점진적 자유화
-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제21조 양허표의 수정
- 제5부 제도규정
- 제22조 협의
-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 제24조 서비스무역 이사회
- 제25조 기술협력
- 제26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 제6부 최종 조항
- 제27조 혜택의 거부
- 제28조 정의
- 제29조 부속서
-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 부속서
 - 해상운송 서비스 협상에 관한 부속서
 - 통신에 관한 부속서
 - 기본 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 상기 부속서 외에 7개의 결정 및 1개의 양허각서가 포함되어 있다.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결정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 (b)항에 관한 결정
 -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결정

- 금융서비스에 관한 결정
-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결정
- 전문직서비스에 관한 결정(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허각서

4. 주요내용

1)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treatment)
서비스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각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에서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즉, 다른 어느 나라에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 분야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개방혜택이 모든 회원국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투명성(Transparency)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수정 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개발도상국들을 국제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혜택과 유보 조항을 둠. 우리나라네 OECD가입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도국 유보혜택에서는 제외됨

4)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각 회원국들이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양당사국간 혹은 여러 당사국들간에 체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자유화 추진방식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추진과정에서는 서비스협정 발효당시의 국별 양허표에 무역장벽을 전부 기재도록 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무역장벽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 (표-1)참조

5)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각국은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구체적으로 이미 양허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Reasonable, objectives and impartial manner)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제1항)

① 규제권리(Recognizing the right of members to regulate) : 국가정책목표(National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포함하여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제권리를 인정하고 있다.⁹⁾

② 인가/승인(Authorization)

관계당국은 신청서의 제출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한

8) 건축(설계)의 경우 양허표(표-1)상의 추가 양허관의 외국건축사(이 경우 Architects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의 활동규율과 1)의 상업적 주제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고수해야만 할 규정이다. 이후의 국내법에 의한 추가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원문은 1편, 표-14참고)

9) 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술, 자격, 면허요건, 기술표준 등에서는 이규정을 활용하여 추후의 협상을 준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1) GATS에 의한 대한민국 양허표(설계분야)

주)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체 4) 자연인의 주체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 가
d. 건축설계서비스<8671> (Architectural services)	1) 상업적 주체 필요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2), 4) : 96. 1. 1부터 한국건축사와 공동 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Foreign Architects)의 건축설계 서비스 공급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자는 6개 건축사시험 과목중 건축사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건축사 자격취득 가능
e. 엔지니어링 서비스<8672> (Engineering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f.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g.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서비스<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다.(제6조제3항)¹⁰⁾**③ 면허요건(Licensing requirements)**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규제하는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4항)

④ 자격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s)¹¹⁾

③ 항과 동일

⑤ 절차(Procedures)¹²⁾

③ 항과 동일

⑥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¹³⁾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기초로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4항)

⑦ 자격검증(Verify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s)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직업인(건축사 등)의 자격(건축사면허)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제6항)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자들의 능력이나¹⁴⁾기준(교육, 자격시험, 학력등)을 검증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국내 규제와 관련하여「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작업반을설치하여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에 관한 조치들이 불 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6) 인정(Recognition)

건축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독특한 자격제도를 운영,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일정 요건의 자격취득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외국 건축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 하기 위해서는¹⁵⁾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 인정제도이다.¹⁶⁾즉 외국의 자격증을 국내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한 회원국은 특정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특정국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자격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 등에 기초하거나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제7조 1항) 회원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 공동 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그리고¹⁷⁾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제7조 5항)

7)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Monopolies and

10)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11) 12) PQ 등의 판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자 선정방법, 인허가 절차, 건설중의 절차, 일방적인 계약관행 등은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이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점 빠른 시간내에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3)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중의 기술표준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시방서등). 이점 특히 후술되는 AGP상의 기술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여야 할 부분이다.

14) Competence와 Qualification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용어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15) 표-1의 건축설계서비스는 추가 조건으로 단서를 설정하여 외국건축사의 국내 활동을 위한 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이점은 합법적인 국내규제로서 인정받고 있다.

16) 서비스무역에서의 장벽(barriers)은 관세(GATT상의)가 아닌 서비스를 규율하는 규제(Regulation)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

17)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 기구)란 NAFTA 협정에서 보이는 relevant Professional bodies (해당 전문기관)와 유사한 어휘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clusive service suppliers)

많은 나라가 독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독점서비스 공급자의 행동규칙을 정하여 독과점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8) 영업관행(Business practices)

각국의 특정영업 관행을 인정하되 이러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한하며, 서비스무역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러한 관행의 철폐를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제9조 제1항)

9) 긴급수입제한 조치(Emergency safeguards measures)

경쟁적인 서비스공급으로 인하여 자국의 서비스공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10)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에는 예외 인정함

우리나라는 이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조달에 관한 사항은 AGP의 적용을 받음¹⁸⁾

5. 구체적 추진방법과 약속(Specific commitments)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추진방식과 관련된 구체적 약속을 규율하는 제3부는 시장접근(16조), 내국인 대우(17조), 추가적 약속(18조)등의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장접근(Market access)

각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와 조건에 따라 서비스나 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¹⁹⁾ 양허표에 기재하는 경우 국내규제로 간주되는 조치들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경제적 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²⁰⁾

② 서비스 총거래액 및 총자산에 대한 제한

③ 총영업량 및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④ 총고용인력 제한

⑤ 업태제한

⑥ 외국인의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각국이 자국의 양허표²¹⁾에 기재한 분야에 대해서(제17조) 또한 양허표에 기재한 조건(제20조)에 따라서만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내의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와 형식적으로 상이한 경우를 부여한다. 즉 차별대우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6. 결정 및 양허각서

1)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허각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GATS에는 별다른 절차는 두지 않

18) AGP(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993. 12. 13 협정체결

19) 대한건축사협회에의 등록이나 설계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라야 된다는 등의 조치는 규제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 경제적 수요조사(ENT, Economic Needs Test)

서비스 공급업체의 설립을 시장의 수요공급 메카니즘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가하는 것을 말함.

21) 양허표의 수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부터 가능

고 있다. 대신 양허각서(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를 준용 하도록 하고 있다.

① 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② 패널의 권고안을 자동적으로 채택한다.

③ 상설 항소기구의 설치

④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각종 불변기간을 정하고 있음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① 패널위원의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명부 작성

② 회원국들의 전문가들의 명부 제공

③ 패널은 서비스협정 및 서비스무역 관련 문제들에 대한 유경험자로서 구성 패널은 분쟁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분야에 관한 지식 보유

⑤ WTO 사무국은 명부 관리

⑥ 서비스 일반협정의 규정이 양허각서 규정보다 우선 한다.

3)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협정문 제6조 국내규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에 관한 조치들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범을 조사·보고하기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party)을 설치한다.

금년 12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료회담의 주제가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에 의한 “회계서비스” 분야로 되어 있음.

건축의 경우는 1997년부터 작업반(w.p)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다.

이에대한 대비로 우리나라의 각종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물론이다. 이와는 별개로 1993년 9월에 타결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문직서비스의

(표-2) 대한민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양허표

• 건축(설계)분야(부속서 Annex 4. 서비스)

GNS/W/120	CPC	분야 및 업종	
I. A. 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설계서비스
I. A. e	8672	Engineering Services	엔지니어링 서비스
I. A. 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I. A. 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 건설분야(부속서 Annex 5. 건설서비스)

CPC	분야 및 업종	
511	Pre-erection work construction sites	정지작업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건축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토목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조립건축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전문건설
516	Installation work	설비공사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마감공사

주) 한글용어 및 명칭은 대한민국 공식 번역문임.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 및 오류는 1 편(96. 10. 건축사지)용어편 참조

국가간 상호인정을 함에 있어서의 “통일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 시험, 직무경험, 행동윤리, 지식 등 광범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들은 정부간의 협상전에 해당전문기관(relevant professional bodies, 건축사협회를 의미)간에 의견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NAFTA의 기준은 작업반에서의 실무기준작업에 원용되리라고 본다.

정부조달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1. 협정의 정의

『자국의 물품 및 서비스 또는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제정,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정부조달 협정은 가입국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복수국간 협정이라고도 한다.²²⁾

2. 협정의 범위

우리나라가 정부조달 협정에 포함시킨 부문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물품 및 서비스(건축설계포함), 건설 등 3개 부문과 23개 정부 투자기관의 물품 및 건설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양허금액 하한) 국한시키고 있다. (표-3 참조)

3. 정부조달협정의 구성 전문

22) AGP 가입국은 24개국임.
오스트리아, 카나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독일연방공화국,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폴란드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핀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일본, 대한민국

- 제1조 적용범위
- 제2조 가액평가 방법
- 제3조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 제4조 원산지 규정
-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 제6조 기술사양
- 제7조 입찰절차
- 제8조 공급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격심사
- 제9조 입찰 참가 조건
- 제10조 입찰 참가자 선정 절차
- 제11조 입찰서 제출시한 및 납품기한
- 제12조 입찰 설명서
-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제14조 시답
- 제15조 제한 입찰 절차
- 제16조 오프셋
- 제17조 투명성
- 제18조 정보 및 검토 : 조달기관
- 제19조 정보 및 검토 : 회원국
-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 제21조 기구설치
-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 제23조 협정 적용의 예외
- 제24조 최종 규정
- 부속서 1. Annex 1. 중앙정부기관
Annex 2. 지방정부기관
Annex 3. 본협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기타 기관
Annex 4. 서비스
Annex 5. 건설서비스

(표-3) 대한민국정부조달시장개방기관 양허표(부속서 Annex 1, 2, 3)

구분	해당기관	대상	금액하한
중앙 정부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조정실, 정무장관(1,2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부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해운항만청, 철도청(42개기관, 산하보조기관 및 부속기관 포함)	물품 서비스 건설	130,000 SDR(1.3억원) 130,000 SDR(1.3억원) 5,000,000 SDR(50억원)
지방 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5개 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물품 서비스 건설	200,000 SDR(2억원) 200,000 SDR(2억원) 15,000,000 SDR(150억원)
정부 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신, 한국관광진흥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물품 서비스 건설	450,000 SDR(4.5억원) — 15,000,000 SDR(150억원)

주) 1. ISDR(특별인출권)은 약 1,000원으로 환산

주) 2. 서비스는 건축설계를 말하며 설계와 공사는 각각의 금액기준에 의한다.

주) 3. 정부투자기관의 서비스 사항의 공란은 설계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협정의 원칙

1)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본 협정이 적용되는 정부조달에서는 모든 법령, 규제, 절차, 관행상 국내업자와 다른 회원국의 공급업자 또는 회원국의 공급업자간에 무차별 대우를 한다. 관세와 부과금에는 예외로 한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유보 및 예외조항을 둔다.

3) 가액 평가방법 (Valuation)

조달기관들은 본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 평가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구를 분할시켜서는 아니된다.(제2조 제3항)²⁴⁾

5. 기술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

1) 기술사양 규정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전문용어, 포장방법, 마크 및 라벨의 표기방법등과 같이 조달대상물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조달대상물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 및 방법, 적합성의 평가절차에 관련된 요구조건 등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기술사양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작성, 채택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 제1항)』

2) 기술사양의 기준

- ① 품질(Quality) : 주로 시방서에 명기되는 사항으로 각종 재료의 품질 및 기준
(KS 등)에서부터 완성품(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 ② 성능(Performance) : 성능시방서의 기준이 되는 요건이다. 각국이 건축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국제 통일 규격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선결요건이다.
- ③ 안전도(Safety) : 건축의 안전도에 관한 기준은 각국이 다르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국가 경제적인 측면과 좁은 의미의 시설물의 안전이라는 양면성을 파악하여 기준을 정하고 향후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²⁵⁾
- ④ 차수·기호(Dimensions, Symbols) :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자재의 표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 ⑤ 전문용어 (Terminology) : ④항과 관계된 것으로서

23) 서비스 금액 1,3억, 2,0억 이하 합은 설계비가 기준가(1,3억, 2,0억)이상일 경우는 모두 개방(국제입찰형식)되는 것을 뜻한다. 또 설계가 개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국제입찰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계도, 시방서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24)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조달기관(entities)은 그 관할기관(agencies)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계약가액(value of contracts)은 평가함이 목적이다. 또한 건설공사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할발주나 분리발주 등을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5) 시방 선진국들도 이 부분에서는 침례한 의견 갈등이 증폭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간극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6) 기술규정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이들과 관련된 처리과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강제적인 행정명령도 이에 포함된다.

27)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나 공급자를 등록이나 조달절차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⑥항)

28) Multilateral Trade Organisation, 다자무역기구 MTO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말함

29) 현상설계경기에 의해 계약자를 결정하는 것.

30) 국산화 비율 지정, 기술라이센싱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설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성능시방서 : 『디자인 또는 외형묘사적인 특징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제2항 ⑨)』② 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재시방서의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시방서를 일부에만 적용하는 구상도 고려해야 한다.

⑦ 특정 상호나 형태 사용 : 입찰서에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언급은 허용이 안된다.

- 특정 상표나 상호
- 특정 디자인이나 형태
- 특정 서비스 제공자나 특허

⑧ 표준 : 인정기관에서 승인한 문서로서 물품 또는 서비스나 이들과 관련된 처리방법 또는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특징 등을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으로 기술사양은 국제표준에 따라야 한다. 단,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²⁶⁾기술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또는 건축기준법에 따를 수 있다. 예를들면 KS가 아니라 ISO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6. 입찰

1) 정의

① 공개입찰 (Open tendering procedures) :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

② 선택입찰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 조달기관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한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

③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 조달기관이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선정하는 절차.

④ 입찰자격 : 외국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서비스 제공자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2) 자격심사 (Qualification)²⁷⁾

① 기업의 능력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만 국한되어야 함.

② 심사과정과 소요기간은 투명하여야 함.

③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3) 조달참여 (Invitation to participate regarding intended procurement)

① 참가초청은 조달공고(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형식을 취한다.

② 참여초청은 다음의 공고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계획공고 (Notice of planned procurement)
- 자격심사제도 공고(Notice regarding a qualification system)

③ 조달공고²⁸⁾

MTO공용어중의 하나로 요약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의 주대상물
- 입찰서 제출 기한

· 계약관련서류 입수 장소

4) 입찰서

입찰서를 제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최소 10일 이상 40일 이내) 제출, 접수 기준을 마련함.

5) 입찰설명서 (Tender document)

조달기관(발주자)이 서비스 제공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로서 다음 정보 및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중 MTO공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용언어

③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설명, 기술사양의 충족, 품질보증, 설계도면, 설명서 등

④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기술적 요건, 재정보증 및 기타 정보

6) 시담 (Negotiation)

시담은 주로 입찰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7)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²⁹⁾

디자인 경연대회(Design contest)의 우승자에게 낙찰하는 계약의 경우. 단, 디자인 경연대회는 본 협정의 원칙에 따라 조직 하여야 하며 특히, 조달공고(3항)에는 본 협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오프셋(Offsets)

조달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이나 선발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나 낙찰과정에서 오프셋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³⁰⁾

8. 회원국의 의무

1) 회원국은 타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정부조달절차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조달에 관한 기본적 통계자료를 수집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제4항)

4) 본 협정에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기된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1)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WTO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사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BS라 함)

DBS는 개념의 구성,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판결, 감시의 권한등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허가할 권한을 갖는다. 또 패널에는 정부조달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10. 국내입법(National legislation)

1)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한 정부는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까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와 본 협정 Annex에 게재된 조달기관이 적용하는 규칙, 절차 및 관행 등이 본 협정의 제반규정에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본 협정에 관련된 각국의 법률 및 규정의 변경사항과 그러한 법률 및 규정 운용상의 모든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CPC기준에 의한 설계의 종류 및 구분

우리나라가 양허한 전문직 서비스중 건축 및 도시관련 업종은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건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건축관련 서비스 양허 내용

CPC	분야 및 내용
867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8671	Architectural Services(건축서비스)
86711	기획 설계 서비스(Advisory and pre-design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관련 문제에 대한 협조와 자문 및 추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획단계에서 연구되는 (preliminary studies) 문제가 포함된다. 예를들면 대지관련 사항 (site philosophy), 개발취지(intent of development), 기후와 환경관련 사항(climatic and environmental concerns) 건물사용에 관한 사항(occupancy requirements), 부지선정의 분석(site selection analysis) 설계와 공사의 예정계획수립 등이다. 그 외에도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조언과 건물의 개보수나 재활용(renovation, restoration, recycling), 질과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도 포함될 수 있다.
86712	건축설계서비스(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①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services) 건축주와 함께 프로젝트의 중요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의 위치, 공간적 요구사항, 예산과 시간 계획을 정하며, 배치도(site plans), 평면도(floor plans), 외부입면도(exterior views)와 관련 스케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②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services)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의 배치도, 형태(form), 사용재료, 구조(structure), 전기 및 기계 시스템과 예상공사를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③ 실시설계(final design services) 입찰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도면과 시방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필요시에 건축주에게 전문가로서의 조언(expert advice)을 하여 주는 것과 입찰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는 과정도 포함된다.
86713	현장지도(관리)³¹⁾ 서비스(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중 조언 및 기술적 보조 서비스(technical assistant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건설이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사무실과 현장 어느곳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사감독(construction Inspection), 공정보고서 작성, 기성에 대한 지불확인서의 서명, 계약도서에 대한 해석, 공사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조언도 포함된다.

CPC	분야 및 내용	CPC	분야 및 내용
86714	건축설계와 현장지도의 복합서비스(Combined architectural design and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 건축설계와 현장지도 서비스의 일괄수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이는 또한 완공후 1년(12개월)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결정 및 보수방법에 대한 지시등 건축물 완공후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수조절시설, 터널, 고속도로, 도로, 인터체인지 및 관련시설, 수문, 운하, 부두, 항만, 상·하수시스템, 호수, 공업용 하수, 분뇨 및 오수 처리장 등 토목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19	기타 건축서비스(Other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서 예를들면 재료의 선정, 준공도면(as-built drawings)의 준비,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운영자료(operating manuals)의 준비 등을 말한다.		
8672	공학기술서비스(Engineering services)	86725	공업제품 및 제작공정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ion) 생산공정 및 시설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나무의 절단방법, 처리, 운반, 적재장배치, 또는 광산개발에 대한 배치 및 지하공사와 쟁도, 펌프장, 파쇄기, 콘베이어, 찌꺼기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정유기공 공정 및 공사, 굴착장비의 유지보수, 석유관련 시설을 말하여, 제조공장의 자재 유통, 장비배치, 재료처리시스템과 특수기계 등의 제품생산과 설비에 대한 기술적 설계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설치단계의 서비스도 포함되며 만일 생산공장 또는 시설의 일괄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물의 기술적 설계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21	기술자문 서비스(Advisory and consultative services) 공학기술적 문제에 관련된 보조, 자문 및 선정작업 서비스를 말한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와 프로젝트의 과급영향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① 지형과 지질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도로, 파이프라인 또는 다른 매설 배관설비의 비용과 공사에 관한 연구 ②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질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로서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 및 설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③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관한 연구 ④ 대안으로서 공정이나 기술 또는 공장배치(plant layout)를 함으로서 생산에 효율적인 소득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도 해당된다. ⑤ 이상 열거한 서비스외에 직접공사에 관련이 없더라도 건물의 구조나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감정평가와 소송건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의 증언과 정부 입법안 수립시 보조역할도 포함될 수 있다.	86726	미분류 기술적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n.e.c.) 기타의 특수 기술적 설계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향, 전동공학, 교통통제시스템, 새로운 제품과 특수 엔지니어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제외 : 제품의美的(美的)인 면이 요구되는 설계와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필요치 않는(예 : 가구)제품으로 복합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것은 별도의 87907(특수디자인 서비스)에 분류하였음.
86722	건물 기초와 구조에 대한 공학기술적 설계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the construction of foundations and building structures)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공공건축 등의 구조(내력)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설계개념을 공학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단계로서 ① 준비계획(preliminary plans) ② 시방서(specifications) ③ 예상견적(cost estimates)과 설시설계단계에서 ① 최종계획(final plans) - 실시설계도면(working drawings) ② 시방서 - 사용재료 명세서, 설치방법, 시간제약 등 명시 ③ 견적서(cost estimates)를 말한다. 또 필요시에 건축주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여 주는 것과 입찰자를 선정하는 작업 및 시공중에도 도움을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	86727 ³¹⁾	공사중의 기타 기술적 서비스(Other engineering services during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phase) 공사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기술적 보조 서비스로서 실시설계(final design)에 따라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축주에게 확인(ensure)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86713(현장지도서비스)와 연관된 기술분야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사무실과 현장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① 현장시공도면(Shop drawings)의 검토(review) ② 시공공정과 품질에 대한 평가(assess)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방문 ③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한 기술적 의문사항의 해석 등이 포함 된다.
86723	건물의 기계와 전기 설비의 공학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mechanical and electrical installations for buildings) 모든 건물의 전력, 조명, 화재경보, 전신, 전화시스템과 기타 전기적인 설치와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설비 및 기타 기계적 설치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 설계 종류 및 단계는 86722에서의 구분과 동일하다.	86729	기타 공학기술 서비스(other engineering services)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의 지질, 지표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86724	토목공사에서의 공학기술적 설계 서비스(Engineering design services for th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works) 토목공사에서의 공학 기술적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리, 육교, 댐, 집수정, 옹벽, 관개수로시스템, 홍	8673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86731	턴키방식의 운송시설을 위한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urnkey projects)
		86732	턴키방식의 상수 및 위생시설을 위한 공학기술의 통합 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ervices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orks turnkey projects)
		86739	기타 턴키방식의 공학기술의 통합서비스(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for other turnkey projects)

31) 직역을 하면 “계약관리 서비스”로 하여야 하지만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설계감리”를 뜻 하므로 여기서는 현장지도(관리)로 하였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사용중인 설계감리의 용어 또한 설계 자체를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점 향후 건설관계법 정비시에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